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 시행계획

박 중 환*

통상산업부는 자원절약과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종합시책」을 지난 '97년 4월 15일 국무총리 주재의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그 시책의 일환으로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를 '97년 5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정부가 수행함으로써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시켜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다.

1. 목 적

(1)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재활용산업의 수요기반 강화

① 품질측면 : 재활용업체의 기술투자 및 품질관리 유도

② 소비측면 :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식 제고

2. 필요성

(1)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보증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나, 현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부재

① 시장경제하에서 궁극적으로 수요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제품의 품질수준임.

②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등도 재활용제품의 품질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수요촉진에 한계

(2) KS의 경우, 최저품질수준 인증제도로써 규격획득 제품도 일반 신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들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이물질 함유 등에 따라 색상·질감 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가 곤란

(3) 또다른 인증제도인 환경표지제도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알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검사 및 사후관리활동 등 품질보증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배제됨.

○ 환경표지제도는 품질향상을 통한 수요촉진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촉진에 한계

※ '96년 11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60개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약 70%가 별도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

3. 제도의 개요

(1) 인증대상 재활용제품

① 원칙적으로는 폐자원을 제품생산의 원료로 사용한 모든 재활용제품이 대상

* 통산산업부 산업환경과

② 규격 및 품질기준 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제도실시의 효용성을 감안하여 KS규격·Q마크규격 등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범용성이 있는 품목인 폐지·폐플라스틱·폐고무를 사용하여 제조한 재활용제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

(2) 품질수준

① 인증대상인 재활용제품의 품질기준은 재활용제품이 아닌 일반 우량 공산품과 유사한 수준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설정

-재활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인증의 주목적이므로 품질기준은 일반제품 수준으로 설정

② 품질기준을 우선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품목별 재생원료 사용비율 설정

-개별 재활용제품에 투입되는 재생원료의 함량은 줄더라도, 품질향상을 통한 수요 촉진으로 전체적으로는 재생원료의 사용 증가

(3) 규격제정 및 인증수행기관

① 규격제정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공산품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

② 다만 동 업무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에 통산부, 환경부 및 자원재생공사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도 일부 참여토록 하여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장치 마련

(4) 규격제정 및 인증절차

①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품질규격을 제정한 후, 재활용업체의 신청에 의해 인증 실시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 중소 재활용업체의 부담을 경감

② 품질이 우수하고 우량제품을 계속 생

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

- 이를 위해 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공장심사 실시

③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우수 재활용제품마크(GR : Good Recycled Products)를 부여

④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인증마크의 계속부여 여부를 결정

(5) 인증획득에 대한 특전

① 인증제품 생산촉진을 위해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

- 산업기반기금으로 시설설치비 및 운전자금 지원('98년 소요자금 60억원 예산신청)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으로 우수재활용제품 기술개발자금 지원 추진

② 인증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 기술품질원내에 (가칭)“자원재활용 기술개발센터” 및 개방실험실을 설치하여 인증획득을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4. 환경표지제도와와의 비교

(1)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는,

① 재활용제품의 품질수준을 국가(국립기술품질원)가 인증하여 줌으로써, 우량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수준의 품질확보에 인증의 중점

② 이를 위해 현행 KS기준보다 엄격한 품질기준을 채택할 계획

③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품검사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품질경영능력을 측정

④ 우선 폐지·폐플라스틱·폐고무 등 범

용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되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⑤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재활용제품 마크(GR마크) 부여

(2) 반면, 환경표지제도는,

① 환경친화적 제품임을 민간단체(환경마크협회)에서 인증함으로써, 환경친화제품에 대한 수요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再生资源 사용정도 등 환경친화성에 인증의 중점

② 이에 따라 품질은 KS규격 등 최소한의 수준만을 요구

③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약

④ 재활용품을 포함하여 모든 제품을 인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양변기·물절약형 수도꼭지 등 219개 품목에 대해 환경마크 부여

※ 환경마크에 재활용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동일용도의 타제품에 비해 유해물질 함량이 적고 오염물질 발생이 적다는 이유로 포함된 것에 불과하며, 재활용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 아님.

⑤ 인증제품에 대해 환경마크 부여

(3) 결국 환경표지제도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주로 심사하는 데 비해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특히 제조업체의 품질경영능력을 심사하는 데 차이가 있음.

<참고>

환경표지제도와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의 비교

구 분	환경표지제도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
근 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1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공업발전법 제15조
목 적	○ 제품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홍보	○ 재활용제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비촉진
주 관	○ 민간단체(환경마크협회)	○ 국가(국립기술품질원)
품 질 기 준	○ KS규격 수준	○ 신제품과 유사한 성능(우수공산품)
인 증 방 법	○ 시험성적서만 제출	○ 제품검사, 공장심사 실시
사 후 관 리	○ 없음	○ 실시
인 증 표 지	○ 환경마크 부여	○ 우수재활용제품 마크(GR마크) 부여
인 증 경 비	○ 신청자 부담	○ 전액 국고지원
비 고	○ 색상·질감 등 미검토	○ 재활용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기준 마련

인증마크 비교

